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5787
----------	-------

제출연월일 : 2025. 12. 31.

제출자 : 정 부

제안이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신상 변동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제대군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 외에도 직업교육훈련지원비, 교육지원비 등에 대한 환수, 국세강제징수 및 결손처분(缺損處分)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상 변동의 신고(안 제4조의2 신설)

- 1)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

하도록 함.

- 2)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상 변동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결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의 환수 및 면제(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 4 신설)

- 1) 국가보훈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지원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2)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24조 또는 제25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
6.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결정의 취소나 기록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제3항 전단 중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국가보훈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제5장에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지원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는 제외한다),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 제19조에 따른 교육지원비, 제20조에 따른 의료지원

비, 제20조의3에 따른 진료비, 제23조의2에 따른 법률구조지원비(이하 “직업교육훈련지원비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가 받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교육훈련지원비등을 지급 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제23조의4(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

을 받은 사람이 제23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23조의3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등의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제1항 중 “취업지원”을 “신상 변동 신고, 취업지원”으로, “전직지원금의 지급 중단과 환수, 지원 정지”를 “전직지원금의 지급 중단, 직업교육훈련지원비등의 환수, 지원 정지, 결손처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업교육훈련지원비등의 환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직업교육훈련지원비등을 환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직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직지원금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8조의3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신상 변동의 신고 등)</u> ① <u>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u> <u>1. 사망한 경우</u> <u>2. 국적을 상실한 경우</u> <u>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한 경우</u> <u>4. 제24조 또는 제25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u> <u>5. 성명·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변동된 경우</u> <u>6.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u> ② <u>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u>

④ (생략)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경우 또는 전직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직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국가보훈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신 설>

제23조의3(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지원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비는 제외한다), 제18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금, 제19조에 따른 교육지원비, 제20조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20조의3에 따른 진료비, 제23조의2에 따른 법률구조지원비(이하 “직업교육훈련지원비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가 받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교육훈련지원비등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신 설>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창업지원, 전직지원금 지급, 교
육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지원
등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 전직
지원금의 지급 중단과 환수, 지
원 정지 및 법 적용대상으로부
터의 배제와 관련된 자격의 확
인과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
을 위하여 금융정보등, 가족관
계등록정보·소득금액증명·지
방세·토지·건물·건강보험·
국민연금·출입국 관련 자료 등

수 있다.

제23조의4(반환의무의 면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23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제23조의3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등의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제의 경우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26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① ----- 신상 변동
신고, 취업지원-----

----- 전직
지원금의 지급 중단, 직업교육
훈련지원비등의 환수, 지원 정
지, 결손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4조의2 (신상 변동의 신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신상변동 발생시(사망, 국적상실 등)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를 받으면 지원결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	안 제23조의3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의 환수)	직업교육훈련 지원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지원금을 환수
3	안 제23조의4 (반환의무의 면제)	지원을 받은 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원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의2 (신상 변동의 신고)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곤란
2	안 제23조의3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의 환수)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곤란
3	안 제23조의4 (반환의무의 면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 추계가 곤란

2. 상세 사유

【안 제4조의2】

- 현재 제대군인의 신상변동 발생 시 사망의심자 HUB시스템 등의 데이터 연계를 통해 신상변동 사항을 파악하여 지원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바, 신상변동 신고에 관한 선언적·권고적 규정을 마련하여 자료 제공 요청, 지원결정의 취소 등 후속 처리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므로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곤란함

【안 제23조의3】

- 전직지원금의 환수는 「제대군인법」에 규정되어 환수하고 있으나(제18조의3), 직업교육 훈련지원비, 교육·의료지원비 등은 환수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에 따라 환수하고 있어 모든 지원금의 과오급금에 대한 환수근거를 「제대군인법」에 선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제도의 실질적 내용에 차이가 없는바, 비용추계가 곤란함

【안 제23조의4】

- 반환의무의 면제는 타 보훈법률(「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등 7개 법률)과 같이 환수의 예외 사례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서 비용의 기술적인 추계가 곤란하고, 타 보훈대상자와 달리 제대군인의 경우 반환의무 면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바 비용 발생의 예측이 어려움

Ⅲ. 부대의견

- 해당없음

Ⅳ. 작성자

- 성명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송한철	김형우	김민영	김진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형우	044-202-5717	kimhw987@korea.kr